ISSUE & FOCUS

발행인 박용주 발행처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(남대문로5가 537) 메트로타워 T02)6908-8200 F02)6312-8959

작성 정성호 재정정보분석센터 소장

조세지출 연계관리

Tax Expenditures Management

- 1 들어가며
-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
-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
-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
- 5 나가며







조세지출 연계관리

(Tax Expenditures Management)

조세지출 관리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의제로 부각된다. 그런데 그 의제는 이내 흐지부지되고 만다. 조세지출 관리는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

으로 관리가 느슨하다. 즉,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. 또,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.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.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

01

들어가며

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?

- ▶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,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,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
- ▶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,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, 재정·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. 통합적 검토 미흡
-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
 미흡

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?

- 조세지출(조세특례 성과평가)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
- ▶ 조세지출 DB관리,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,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(Pay As You GO) 적용을 고려
- ▶ 예산안 부속서류인 '조세지출예산서'와 조세지출 평가(성과관리)의 근간인 '조세지출 기본계획'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
- ▶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

02

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

- ▶ (조세지출 정의) 조세지출이란 "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"를 의미(대한민국정부, 2022)
- ▶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"조세감면·비과세·소득공제·세액공제·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"을 조세지출로 규정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2조의2)
- ▶ OECD(1996)는 "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(benchmark tax system)를 벗어난 것"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
-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, 세율구조, 과세구간, 과세단위, 과세기간, 국제 조세규약 등임
- ▶ 다만,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,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
- ▶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·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
- 조세지출예산서란,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, 세액공제·감면,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(국세 감면)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(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, '21년 실적 및 '22년, '23년 전망)을 항목·기능별로 집계·분석한 자료로서,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

▶ (조세지출 유형) 조세지출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개별세법,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

- ▶ 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조세지출)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모든 비과세·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
-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(동업기업 과세특례)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
- 또,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
- (개별세법상 조세지출)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,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·연혁·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¹⁾
-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'개별세법상 조세지출'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(예.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)
- (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)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, 조세지출에 포함

○ 1) 판단기준은 각세법상 과세 기본구조,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, 공적지출 등

03

조세지출 추이, 현황 및 관리수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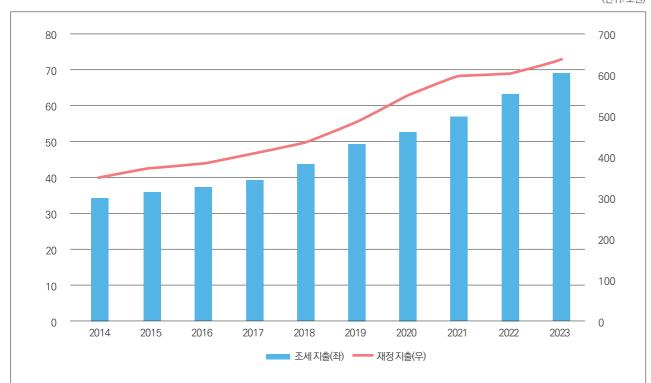
1. 조세지출 추이

▶ (최근 추이) 재정지출 증가 규모에 비해 조세지출의 증가 규모가 큼

- ▶ 10년간(2014년 대비) 재정지출은 1.84배 증가, 조세지출은 2.02배로 더 크게 증가
- 다시 말해, 2014년 347.9조원이던 재정지출이 2023년 638.7조원으로 증가, 2014년 34.3조원이던 조세 지출이 2023년 69.3조원으로 증가
- ▶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
- 현재 재정구조로 두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관리할 필요

〈그림 1〉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





| 구분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조세지출 | 34.3 | 35.9 | 37.4 | 39.7 | 44 | 49.6 | 53 | 57 | 63.6 | 69.3 |
| 재정지출 | 347.9 | 372.1 | 384.9 | 406.6 | 434.1 | 485.1 | 549.9 | 601 | 607.7 | 638.7 |

자료: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.

2. 조세지출 현황2

) '21년, 국세감면액(실적) 57.0조원, 국세감면율 13.5%, 법정한도³ 14.3% 대비 0.8%p 하회

- ▶ 국세감면액은 '20년 52.9조원 대비 4.1조원 증가한 57.0조원 규모
- ▶ 코로나19 대응⁴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(전년 대비 +60조원)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

▶ '22년, 국세감면액(전망) 63.6조원, 국세감면율 13.1%, 법정한도 14.6% 대비 1.5%p 하회 전망

- ▶ 국세감면액은 '21년 57.0조원 대비 6.6조원 증가한 63.6조원 규모
- ▶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⁵⁾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(전년 대비 +57조원)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 전망

) '23년, 국세감면액(전망) 69.3조원, 국세감면율 13.9%, 법정한도 14.3% 대비 0.4%p 하회 전망

- ▶ 국세감면액은 '22년 63.6조원 대비 5.7조원 증가한 69.3조원 규모
- ▶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, 근로·자녀장려 재산요건 완화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

〈표 1〉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

(단위: 억원, %, %p)

| 구분 | '21년(실적) | '22년(전망) | '23년(전망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국세감면액 (A) | 570,248 | 635,776 | 693,155 |
| ○국세수입총액 ¹⁾ (B) | 3,639,730 | 4,212,889 ²⁾ | 4,286,370 ³⁾ |
| ○국세감면율[A/(A+B)] | 13,5 | 13.1 | 13.9 |
| ○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⁴⁾ | 14.3 | 14.6 | 14.3 |

주1)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(「국가재정법」 시행령 제41조).

- 2) 본절의 내용은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를 원용함
- 3) 국세감면율 법정한도(권고치) =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 0.5%p
- 4)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(+0.7조원),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 감면(+0.5조원) 등
- 5)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(R&D 세액공제, 통합투자세액공제) 세제지원(+1.9조원)

^{2) 2022}년 2차 추가경정예산('22.5월) 기준.

^{3) 2023}년 정부예산안 기준.

⁴⁾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=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0.5%p.

자료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6의 일부 내용 수정.

▶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(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)

- '21년 대비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, 보건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, 농림수산은 감소
- ▶ ('23년) 4대 분야(사회복지, 보건, 농림수산,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) 조세지출 비중은 84.2%로 '22년 대비증가
- '22년 대비 사회복지,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는 증가한 반면 보건, 농림수산은 감소

〈표 2〉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

(단위: 억원, %)

| | 에시네크기즈 | 20 | 21 | 20 | 22 | 2023 | |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|
| | 예산분류기준 | 실적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|
| 1 | 일반공공행정 | 45,767 | 8.0 | 53,876 | 8.5 | 59,147 | 8.5 | |
| 2 | 공공질서 및 안전 | 0 | 0.0 | 0 | 0.0 | 0 | 0.0 | |
| 3 | 외교·통일 | 10 | 0.0 | 9 | 0.0 | 9 | 0.0 | |
| 4 | 국방 | 262 | 0.0 | 249 | 0.0 | 264 | 0.0 | |
| 5 | 교육 | 10,167 | 1.8 | 10,357 | 1.6 | 11,122 | 1.6 | |
| 6 | 문화 및 관광 | 273 | 0.0 | 348 | 0.1 | 377 | 0.1 | |
| 7 | 환경 | 14,601 | 2.6 | 17,617 | 2.8 | 18,807 | 2.7 | |
| 8 | 사회복지 | 200,128 | 35.1 | 209,650 | 33.0 | 231,200 | 33.4 | |
| 9 | 보건 | 78,926 | 13.8 | 89,476 | 14.1 | 95,164 | 13.7 | |
| 10 | 농림수산 | 63,938 | 11.2 | 68,957 | 10.8 | 73,890 | 10.7 | |
| 11 |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| 139,962 | 24.5 | 166,531 | 26.2 | 183,127 | 26.4 | |
| 12 | 교통 및 물류 | 4,925 | 0.9 | 5,676 | 0.9 | 6,046 | 0.9 | |
| 13 | 통신 | 0 | 0.0 | 0 | 0.0 | 0 | 0.0 | |
| 14 | 국토 및 지역개발 | 11,239 | 2.0 | 12,914 | 2.0 | 13,875 | 2.0 | |
| 15 | 과학기술 | 52 | 0.0 | 116 | 0.0 | 126 | 0.0 | |
| 16 | 예비비 | 0 | 0.0 | 0 | 0.0 | 0 | 0.0 | |
| | 합계 | 570,248 | 100.0 | 635,776 | 100.0 | 693,155 | 100.0 | |

주: 2.공공질서 및 안전, 13.통신, 16.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. **자료**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13.

세목별 조세지출 현황(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)

- ▶ ('22년)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.1%로 '21년 대비 감소
- '21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,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
- ▶ ('23년)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.1%로 '22년과 동일
- '22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,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

〈표3〉세목별조세지출

(단위: 억원, %)

07

| | 구분 | 2021 | | 2022 | | 2023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TE. | 실적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전망 | 비중 |
| Α. | 직접국세 | 445,381 | 78.1 | 506,082 | 79.6 | 554,044 | 79.9 |
| | 1. 소득세 | 345,618 | 60.6 | 372,715 | 58.6 | 403,988 | 58.3 |
| | 2. 법인세 | 88,924 | 15.6 | 113,316 | 17.8 | 127,862 | 18.4 |
| | 3. 상속·증여세 | 10,838 | 1.9 | 20,049 | 3.2 | 22,194 | 3.2 |
| B. 간접국세 | | 124,119 | 21.8 | 129,071 | 20.3 | 138,372 | 20 |
| | 1. 부가가치세 | 101,755 | 17.8 | 105,930 | 16.7 | 113,210 | 16.3 |
| | 2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7,758 | 1.4 | 6,357 | 1.0 | 6,699 | 1.0 |
| | 3. 개별소비세 | 7,483 | 1.3 | 9,444 | 1.5 | 10,422 | 1.5 |
| | 4. 주세 | 1,084 | 0.2 | 1,911 | 0.3 | 2,029 | 0.3 |
| | 5. 인지세 | 122 | 0.0 | 131 | 0.0 | 136 | 0.0 |
| | 6. 증권거래세 | 2,592 | 0.5 | 1,415 | 0.2 | 1,631 | 0.2 |
| | 7. 교육세 | 3,325 | 0.6 | 3,883 | 0.6 | 4,245 | 0.6 |
| C | 관세 | 748 | 0.1 | 623 | 0.1 | 739 | 0.1 |
| | 합계 | 570,248 | 100.0 | 635,776 | 100.0 | 693,155 | 100.0 |

자료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15의 일부 항목 재구분.

▶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현황(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)

- ▶ ('22년)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.1%로 '21년 대비 증가
- '21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,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
- ('23년)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.0%로 '22년 대비 감소
- '22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,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

〈표 4〉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

(단위: 억원, %)

| | 74 | 20 | 21 | 20 |)22 | 2023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|
| | 구분 | 실적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|
| Α. | 직접감면 | 569,657 | 99.9 | 635,273 | 99.9 | 692,614 | 99.9 | |
| | 1. 비과세 | 33,751 | 5.9 | 35,992 | 5.7 | 38,495 | 5.6 | |
| | 2. 세액감면 | 71,602 | 12.6 | 74,780 | 11.8 | 80,360 | 11.6 | |
| | 2-1. 소득·법인세 감면 | 44,595 | 7.8 | 46,145 | 7.3 | 49,622 | 7.2 | |
| | 2-2. 양도·증여세 감면 | 27,006 | 4.7 | 28,634 | 4.5 | 30,739 | 4.4 | |
| | 3. 세액공제 | 143,394 | 25.1 | 183,843 | 28.9 | 203,865 | 29.4 | |
| | 4. 소득공제 | 128,605 | 22.6 | 142,810 | 22.5 | 152,340 | 22.0 | |
| | 5. 저율과세 | 5,588 | 1.0 | 9,188 | 1.4 | 10,022 | 1.4 | |
| | 6. 기타감면 | 186,717 | 32.7 | 188,660 | 29.7 | 207,533 | 29.9 | |
| | 6-1. 근로·자녀장려세제 | 52,115 | 9.1 | 49,832 | 7.8 | 58,493 | 8.4 | |
| | 6-2. 부가가치세 영세율 | 22,572 | 4.0 | 26,270 | 4.1 | 28,076 | 4.1 | |
| | 6-3. 부가가치세 면제 | 14,828 | 2.6 | 9,201 | 1.4 | 9,833 | 1.4 | |
| | 6-4. 개별소비세·교육세 면제 | 18,507 | 3.2 | 19,629 | 3.1 | 21,307 | 3.1 | |
| | 6-5. 주세·증권거래세 면제 | 3,858 | 0.7 | 3,512 | 0.6 | 3,855 | 0.6 | |
| | 6-6. 기타(매입세액공제 등) | 74,088 | 13.0 | 79,593 | 12.5 | 85,231 | 12.3 | |
| | 6-7. 관세 감면 | 748 | 0.1 | 623 | 0.1 | 739 | 0.1 | |
| В. | · 간접감면(준비금, 과세이연 등) | 592 | 0.1 | 503 | 0.1 | 541 | 0.1 | |
| | 합계 | 570,248 | 100.0 | 635,776 | 100.0 | 693,155 | 100.0 | |

자료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17.

▶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(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)

- ▶ ('22년) 중소기업, 연구개발, 국민생활안정, 근로·자녀장려,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68.4%로 '21년 대비 감소
- '21년 대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, 국민생활안정, 근로·자녀장려, 간접국세는 감소
- ▶ ('23년) 중소기업, 연구개발, 국민생활안정, 근로·자녀장려,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68.6%로 '22년대비 증가
- '22년 대비 연구개발 및 근로·자녀장려는 증가한 반면, 국민생활안정, 간접국세, 중소기업은 감소

〈표5〉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

(단위: 억원, %)

| 분야 | | 2021 | | 20 | 22 | 2023 | |
|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군아 | 실적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전망 | 비중 |
| 1 | 중소기업 | 26,889 | 4.7 | 33,338 | 5.2 | 34,678 | 5.0 |
| 2 | 연구개발 | 30,270 | 5.3 | 41,655 | 6.6 | 49,663 | 7.2 |
| 3 | 국제자본거래 | 1 | 0.0 | 17 | 0.0 | 19 | 0.0 |
| 4 | 투자촉진 | 14,362 | 2.5 | 22,564 | 3.5 | 24,830 | 3.6 |
| 5 | 고용지원 | 30,609 | 5.4 | 39,771 | 6.3 | 43.025 | 6.2 |
| 6 | 기업구조조정 | 1,799 | 0.3 | 4,211 | 0.7 | 4,615 | 0.7 |
| 7 | 금융기관구조조정 | 0 | 0.0 | 0 | 0.0 | 0 | 0.0 |
| 8 | 지역균형발전 | 28,766 | 5.0 | 30,222 | 4.8 | 32,481 | 4.7 |
| 9 | 공익사업지원 | 8,621 | 1.5 | 10,037 | 1.6 | 10,863 | 1.6 |
| 10 | 저축지원 | 17,408 | 3.1 | 19,068 | 3.0 | 21,237 | 3.1 |
| 11 | 국민생활안정 | 178,402 | 31.3 | 191,155 | 30.1 | 206,260 | 29.8 |
| 12 | 근로·자녀장려 | 52,115 | 9.1 | 49,832 | 7.8 | 58,493 | 8.4 |
| 13 | 기타직접국세 | 25,432 | 4.5 | 35,016 | 5.5 | 37,037 | 5.3 |
| 14 | 간접국세 | 116,014 | 20.3 | 118,644 | 18.7 | 126,722 | 18.3 |
| 15 | 외국인투자 | 753 | 0.1 | 855 | 0.1 | 926 | 0.1 |
| 16 | 제주국제도시육성 | 2,046 | 0.4 | 3,206 | 0.5 | 3,406 | 0.5 |
| 17 | 기업도시 | 8 | 0.0 | 49 | 0.0 | 53 | 0.0 |
| 18 | 지역발전 | 11 | 0.0 | 25 | 0.0 | 27 | 0.0 |
| 19 | 농협구조개편 | 559 | 0.1 | 586 | 0.1 | 626 | 0.1 |
| 20 | 공적자금 회수 | 0 | 0.0 | 0 | 0.0 | 0 | 0.0 |
| 21 | 수협구조개편 | 51 | 0.0 | 52 | 0.0 | 56 | 0.0 |
| 22 | 사업재편 계획 | 0 | 0.0 | 0 | 0.0 | 0 | 0.0 |
| 23 | 기타 | 36,132 | 6.3 | 35,472 | 5.6 | 38,139 | 5.5 |
| | 합계 | 570,248 | 100.0 | 635,776 | 100.0 | 693,155 | 100.0 |

자료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19.

▶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(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)

- ▶ ('22년) (개인) 중·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68.4%로 '21년 71.1% 대비 감소, (기업) 중소기업이 감면 총액의 67.4%로 '21년 70.9% 대비 감소
- 개인은 '21년 대비 고소득자 증가, 중·저소득자 감소,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은 증가, 중소 기업과 기타기업은 감소

FIS ISSUE & FOCUS

- ▶ ('23년) (개인) 중·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68.8%로 '21년 68.4% 대비 증가, (기업) 중소기업이 감면총액의 66.2%로 '21년 67.4% 대비 감소
- 개인은 '21년 대비 중·저소득자 증가, 고소득자 감소,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증가,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기타기업은 '22년과 동일

〈표6〉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

(단위: 억원, %)

| | 78 | 20: | 21 | 20 | 22 | 20 | 23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구분 | | 비중 | 전망 | 비중 | 전망 | 비중 |
| | 중·저소득자 | 257,853 | 71.1 | 273,047 | 68.4 | 297,942 | 68.8 |
| 개인 | 고소득자 | 104,940 | 28.9 | 126,249 | 31.6 | 135,360 | 31.2 |
| | 계 (총계 대비) | 362,793 | 100.0 (63.6) | 399,296 | 100.0 (62.8) | 433,303 | 100.0 (62.5) |
| | 중소기업 | 143,594 | 70.9 | 156,490 | 67.4 | 168,371 | 66.2 |
| | 중견기업 | 6,587 | 3.3 | 8,734 | 3.8 | 9,601 | 3.8 |
| 기업 | 상호출자제한기업 | 22,133 | 10.9 | 35,985 | 15.5 | 42,443 | 16.7 |
| 10 | 기타기업 | 30,285 | 14.9 | 30,812 | 13.3 | 33,875 | 13.3 |
| | 계 (총계 대비) | 202,598 | 100.0 (35.5) | 232,020 | 100.0 (36.5) | 254,290 | 100.0 (36.7) |
| 구분 곤린 | | 4,857 | | 4,460 | | 5,563 | |
| | 총계 | 570, | 248 | 635,776 | | 693,155 | |

주1) 중·저소득자: 근로소득이 7,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, 고령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.

3. 조세지출 관리수단

▶ 조세지출예산서: 계획·예산 관점

- ▶ (조세지출예산서)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
- ▶ 3개 연도(직전, 해당, 다음연도)의 조세지출 실적·전망을 집계·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해 조세 지출의 관리와 통제
- 법적 근거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2조의2(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),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및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

- (조세지출예산서 연혁)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
-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(직전연도, 해당연도)의 국세감면 실적·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·공표
- 2010년부터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3개 연도(직전·해당·다음연도)의 국세감면 실적·전망 금액을 집계·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

〈표7〉 조세지출보고서 vs 조세지출예산서

| 구분 | 조세지출보고서 | 조세지출예산서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운용기간 | 1999~2009년 | 2010년 이후 |
| 법적의무 | 임의제출 | 의무제출(예산안 첨부서류) |
| 분류기준 | 지원 분야별 | 기능별(예산분류기준) |
| 대상기간 | 2개 연도(직전·해당) | 3개 연도(직전·해당·다음) |

자료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4의 일부 내용 수정.

▶ 조세지출 기본계획⁶: 관리·평가 관점

- ▶ (조세지출 기본계획)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된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단
- 국세감면 한도는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감면율 +0.5%p 이하가 되도록 노력(「국가재정법」 제88조)
-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⁷⁾을 수립해 배포
- ▶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, 심층평가,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2조)
- (예비타당성평가) 조세특례 신설·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, 제도의 필요성·적시성· 기대효과·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
-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평가를 요구(필요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)
- 기재부 장관은 전문 조사·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개정 법률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

○ 6) 이하 내용은 「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을 원용함

7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2조(조세특례의사전·사후관리) ①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

²⁾ 중소기업: 개인사업자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.

³⁾ 중견기업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견기업.

⁴⁾ 상호출자제한기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.

자료: 대한민국정부(2022),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p.22.

FIS ISSUE & FOCUS

- ▶ (의무심층평가)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·경제적 효과·소득재분배 효과·재정영향 등을 평가
- 기재부 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
- ▶ (임의심층평가)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,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 특례에 대해 평가
- ▶ (부처자율평가)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한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

〈임의심층평가 대상〉

-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
-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
-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·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
- -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, 그 밖에 기재부 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〈표8〉'23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

| 구분 | 평가 대상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예타 (1건) | 중고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(과기부) | 중고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|
| | ① [*] 농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| 농·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면제 |
| | *(임의)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|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 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면제 |
| |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| 취업 후 3년(청년의 경우 5년)간 근로소득세 70% 감면(청년의 경우 90%) |
| 심층평가 (23건) | ③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|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%~40% 감면 |
| (== <u>L</u>) | ④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|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|
| |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| 회사택시 기사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% 경감 |
| | 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|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하여 19% 분리과세 |
| | ⑦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|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, 부실금융기관 등이 보유증권을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양도하는 등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|

| 구분 | 평가 대상 | 주요 내용 | | |
|-------|---|--|--|--|
| | ⑧ *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 특례 |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,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, 전산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| | |
| | *(임의)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,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, 전산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| | |
| | ⑨ *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|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비롯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원의 배당 소득세 면제,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·초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100% 감면 | | |
| | *(임의)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|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,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, 영어 조합법인·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서 100% 감면 | | |
| | *(임의)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|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비롯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, 농업회시 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·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감면 | | |
| | 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, 교육비, 월세액 공제 | 의료비·교육비의 15%, 월세액의 10%를 소득세에서 공제 | | |
| | (임의) 근로장려금 | 기구·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. 지급 | | |
| 심층평가 | (임의)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| 납부의무자가 일정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3% 세액 공제 | | |
| (23건) | (임의)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|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%(연 300만원 한도),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(상환 방식에 따라 연 500만원 또는 1,800만원·1,500만원· 300만원 한도)을 근로소득 특별공제 | | |
| | (임의)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|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 등)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 계약 체결 시 월세 지급액으 10%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의 경우 12%)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저 (월세액 750만원 한도) | | |
| | (임의) 인지세의 면제(농어민 지원) | 소비대차증서, 예금·적금증서·통장,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·이전·변경·소멸을 증명하는 증서,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,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,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하인지세 면제 | | |
| | (임의)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|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%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민 큼의 세액 또는 ②수입금액의 5%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·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| | |
| | (임의)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| 투자금액 5,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 9% 분리과세 | | |
| | (임의) 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| 양도대금의 50%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,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| | |
| | (임의)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|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(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) | | |

자료: 기획재정부(2023.3.), 「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, p.12~13. 일부 수정.

04

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

지출정보의 연계관리

- ▶ 재정지출과 연계관리를 위해 조세지출 DB를 관리할 필요. 즉, 재정지출 정보를 dBrain에서 관리하듯,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
-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
- 통계청 발간 '국세통계연보'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'조세지출예산서'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,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
- 우선,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. 즉,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(69개→75개)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
- 예를 들어 재정지출(예산체계)의 110개 분야-114개 부문은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세지출(조세지출 예산서)에 114개 부문을 활용, 조세지출의 부문을 재정지출에 부합되게 개편할 필요
- ▶ 예산안 부속서류인 '조세지출예산서'와 조세지출 평가(성과관리)의 근간인 '조세지출 기본계획'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
 -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기초해 평가한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, 정치적 이유로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
 - *심층 평가 결과 '축소 연장'이 정부 세법개정안과 최종 개정세법에 '확대 연장'으로 반영, 또 정부 세법개정안에 '축소 연장', 최종 세법 개정에 '단순 연장'으로 반영
-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, 즉, 예산안은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해 연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
 -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⁸⁾에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총량 관점의 재정관리 필요
- 아울러,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시기를 5월로 당겨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(국세감면실적) 내역 공개도 고려할 필요

▶ 재정지출 총량 관리 및 평가

▶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을 재정총량관리 관점에서 통합심층평가⁹, 조세지출 심층평가 시 유사한 조세 특례제도는 그룹화¹⁰⁾해 평가를 고려

〈캐나다 통합관리제도(The Envelope system)〉

- (의의)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
- (내용) 10개 정책 분야(envelope)별 직접지출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을 심사조정
- (효과) 집행 부처의 조세지출 신규 도입 요구 크게 감소
-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(통합심층평가)를 고려
- ▶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
-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(총량제)를 마련,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(재정지출)을 줄여나갈 필요

▶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

- 재정당국 내(예산실과 세제실),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,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
-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,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'폐지'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,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?도 관건
- ▶ 정부와 국회 간(세법개정안 반영, 예산심의 시 총량제(PAYGO))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하나
-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,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
- 조세특례 심층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, '축소연장'이 '확대연장'으로 반영되기도 하고, '단순연장'으로도 반영
-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보단 동일한 재정지출 수단이란 인식의 확산 필요
- 「국가재정법」에 규정된 '국세감면율 법정한도'는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, 따라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

- 8)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이고,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2개 분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게 개편이 고려되어야 함
- 9) 캐나다의 경우, 지출관리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·관리하는 공식적인 메커니즘(Envelope system)을 시행(1980년), 1989년 이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1994년 예산편성까지 영향을 미침

15

10) 예를 들어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를 포괄한 '친환경자동차'를 의미

05 Lither

정책적 함의

-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누구나 동의할 순 있지만,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 난제 (wicked problems) 중 난제임
- ▶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불가피한 실정.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. 즉, 전략적 재원배분 관점에서 재정·조세지출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
- ▶ 대안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,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, 예·결산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조세지출 내역 통합공개 및 심의, 이를 위해 재정지출과 동일한 범주에서 조세지출 DB관리,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의 분야-부문체계를 일치할 필요
- ▶ 아울러 통합심층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「국가재정법」 제16조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2조 등을 개정할 필요

참고문헌

기획재정부. (2023). 「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.

대한민국정부. (2022). 「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.

정성호. (2019).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. 한국재정정보원. 재정정보분석 19-1.

OECD. (1996). Tax Expenditures: Recent Experience.